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기반 매체

이 동 근

조선대 신방과 교수
광주중재부 중재위원

위 원회는 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 9일 광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 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근 조선대 교수가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기반 매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김병하 중재부장(광주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서 론

언론의 자유는 인간이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¹⁾ 그런데 전통적인 언론의 자유 개념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가해자는 국가권력, 전제왕권 등이었고, 언론자유 실질적인 의미는 국가권력, 전제왕권이 행하는 공적 검열로부터의 자유였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성숙하면서 오늘날 일부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드러내 놓고 무지막지하게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7년 6월 항쟁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이룩되어 언론의 자유가 급신장하였다. 언론이 현직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등,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언론기관 자체가 시민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들이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과거 국가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던 시절, 피해자인 일반 시민은 언론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국가권력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였지만, 오늘날 시민들은 언론기

1)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1조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관이라는 새로운 가해자와 상대하게 된 셈이다.²⁾ 이런 상황에서는 언론기관의 자유와 전통적인 언론의 자유를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즉,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언론자유와 주체도 궁극적으로 국민일진대, 언론기관이 주장하는 ‘언론자유’로 인해 정작 주체인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을 개인존중이라는 인권은 서로 끊임없이 충돌하는 모순관계에 있다. 그리고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수반되는 것처럼, 특히 언론의 자유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언론기관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피해 사항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1981년에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터넷의 대중화로 사회적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인터넷 기반 매체로 인한 언론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 발효된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의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인터넷기반 매체

최근 수십 년간 전자·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으로 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등장할 때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내용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내용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초래하였다. 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이제까지 사용되어 왔던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선 기술을 일컫는다.

그동안 등장했던 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비해 여러 차원에서 매우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인터넷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월드와이드웹(WWW)의 등장과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해 인터넷은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이용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정치학자인 드 솔라 폴(de Sola Pool)은 말하기와 글쓰기, 인쇄, 방송에 이어 인터넷을 인류의 커뮤니케이션 발달 과정 중 네 번째 단계라고 주장한 바 있다.³⁾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인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상호작용성, 다른 사이트나 다른 문서로 손쉽게 연결이 가능한 하이퍼텍스트(Hypertext)성, 정보의 빠른 업데이트 능력, 송수신상의 물리적 거리나 시간적 제약의 극복, 문자·음성·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성 등은 특히 저널리즘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여론과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듯이 인터넷이라는 뉴 테크놀로지도 그

2) 박형상, 언론으로부터의 자유와 법적 대응,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김동민 편저, 한나래, 1993) pp.193-213.

3) de Sola Pool, Ithiel (1990). Technologies without Boundaries, (Ed.). by E. M. Noa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 7.



광주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참석한 1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열린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단점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저널리즘에 악영향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마치 원자력 기술을 질병 치료에 이용하면 인류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게 되지만, 전쟁에서 대량살상 무기로 사용될 경우 인류의 멸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최근 몇몇 인기 연예인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온 자신들에 관한 악의적인 글들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자살한 사건들이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저널리즘과 관련하여 인터넷기반 매체는 이른바 게이트키퍼 기능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손쉽게 올린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함량 미달인 기사들이 인터넷상에서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해악은 심대하다.

인터넷의 급속한 대중화로,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신문과 방송 등 이른바 오프라인 매체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고 그 대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매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조정대상 언론사에 포함시켰다. 2005년 7월, 언론중재법과 함께 본격 시행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서 인터넷신문이 정식 언론으로 규정됨으로써 전통적인 언론매체와 대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⁴⁾ 현재 우리나라에는 오프라인상에서는 언론활동을 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만 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신문사들이 등록된 것만도 1,700여 개나 된다.⁵⁾

4)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5) 출처: <http://mediasis.kpf.or.kr/mediaDirectory/list.asp?fLoad=1> [접속일: 2010. 3. 22]

3.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온라인 저널리즘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오프라인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미디어로서 온라인 독자층만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신문이다. 오프라인상의 어떤 매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독립형 온라인 미디어라고도 부르는 데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신문으로는 마이데일리(<http://www.mydaily.co.kr>),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등이 있다.

둘째, 기존 오프라인 매체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언론사닷컴으로서, 오프라인 매체에 종속되었다고 해서 종속형 온라인 미디어라고도 부른다. 1992년 미국의 일간지인 『시카고 트리뷴』이 세계 최초로 웹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언론사닷컴으로는 1995년 『중앙일보』가 국내 최초로 발간한 조인스닷컴(<http://www.join.com>), 『조선일보』의 조선닷컴(<http://www.chosun.com>), 『한국일보』의 한국i닷컴(<http://www.hankooki.com>) 등이 있다.⁶⁾

셋째, 검색엔진이나 포털사이트가 기존 미디어 뉴스를 그대로 혹은 편집하여 전달하는 재매개 저널리즘(remediated journalism)으로서 인터넷 뉴스서비

스 혹은 인터넷포털사(이하 ‘인터넷포털사’라 칭함)가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포털사로는 네이버(<http://www.naver.com>), 다음(<http://www.daum.net>), 네이트(<http://www.nate.com>) 등이 있다.⁷⁾

그밖에 인터넷 게시판이나 토론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 자체도 온라인 저널리즘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를 읽는다. 또한 컴퓨터를 활용한 취재보도나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한 취재보도 자체도 넓은 의미의 온라인 저널리즘으로 분류한다. 즉, 취재 보도 시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인터넷 인물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혹은 이메일을 통한 외국 취재원과의 인터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005년에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오프라인상에서는 기사제공 서비스를 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만 뉴스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신문의 뉴스 기사에 대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제정되었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인터넷포털사와 언론사닷컴이 제공하는 기사는 정정보도 등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했었다. 그런데 언론사닷컴과 인터넷포털사⁸⁾와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스 서비스는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

6) 출처: http://www.rankey.com/rank/rank_site_cate.php?cat1_id=6&cat2_id=83&cat3_id=495 [접속일: 2010. 3. 22]

7) 출처: http://www.rankey.com/rank/rank_site_cate.php?cat1_id=22&cat2_id=227&cat3_id=1215 [접속일: 2010. 3. 22]

8) 온라인 저널리즘의 유형 중 재매개 저널리즘에 속하는 포털(portal)이란 원래 ‘입구, 현관, 정문’이란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을 시작하면 거치게 되는 첫 관문이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포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원래 검색 기능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전자메일, 홈쇼핑, 블로그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해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급증하였다.⁹⁾

예를 들어 네이버나 다음의 경우 일일 방문자수가 각각 1천만 명을 넘는 등 인터넷포털사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다. 특히 스스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고 이미 타사가 제작한 정보를 전달만 하는 재매개 저널리즘(remediated journalism)인 인터넷포털사의 경우는 자체 제작 사업자에 비해 정보의 내용과 질을 검증하는 품질관리 과정이 구조적으로 미흡하다. 인터넷에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들은 많게는 100개 이상의 언론사에서 기사를 공급받아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에서 주된 뉴스 유통창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터넷포털사가 제공하는 뉴스에 의한 피해의 구제 방안에 대한 비등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정 언론중재법이 2009년 8월 7일, 법률 제9425호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개정 언론중재법은 “기사

제공 언론사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정 언론중재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만 누리고 법적 책임은 없었던 인터넷포털사를 언론 관련 법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포털사뿐 아니라 IPTV (Internet Protocol TV), 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중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부터 이미 인터넷을 이용하여 방송 및 기타 콘텐츠를 텔레비전 수상기에 제공하는 IPTV 시대로 접어든 바 있으며 앞으로 주요 뉴스 매체로 사회에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⁰⁾

4.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현황과 향후 과제

1) 현 황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2009년 8월 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과 제16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포털사의 뉴스 서비스 분야 진출이 가속화되어 기존 오프라인 매체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전문적으로 뉴스를 제공하던 인터넷신문과 언론사닷컴 등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11월 <다음>은 임시조직이었던 미디어팀을 미디어본부로 승격하고 중앙일간지 기사 출신을 본부장으로서 영입하여 2003년 3월 <미디어다음>이라는 뉴스전문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계속해서 <야후> <네이버> <애플> 등 여타 인터넷포털사들도 자사의 뉴스부문 인력을 확충하고 제휴언론사 확대 등을 통해 미디어 사이트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상반기 이후 포털사이트 뉴스채널의 순 방문자수가 언론사닷컴의 방문자수를 본격적으로 앞지르게 되었다.

- 9) 2008년 한 해 동안 인터넷 이용자 중 77.3%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했으며 이 중 70.5%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현(2008. 10.16), 최구식 “신문구독률, 인터넷뉴스 이용률의 절반도 안 돼”. 『뷰스앤뉴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1540> 접속일: 2010. 3. 22]
- 10) IP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영화·방송 프로그램 등 동영상 콘텐츠와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양방향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다. 시청자가 원하는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선택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과 다르다. IPTV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과 셋톱박스 또는 전용모뎀, 인터넷 회선만 연결돼 있으면 된다. IPTV를 통해 리모컨만으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 영화감상, 홈쇼핑, 홈뱅킹, 온라인 게임 등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 및 부가서비스를

2010년 2월 28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청구 건수는 총 1,427건이었고, 그 중에서 인터넷신문이 230건으로 총 조정 청구 건수의 16.1%를, 언론사닷컴과 인터넷포털사가 무려 444건으로 총 조정 청구 건수의 31.1%를 차지하였다. 신문, 방송, 잡지, 뉴스통신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체를 제외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스서비스(인터넷신문, 언론사닷컴, 인터넷포털사)가 전체 조정 청구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7.2%를 차지한 것이다.

동 기간 중 조정이 성립된 총 360건 중, 인터넷신문의 조정성립 건수가 94건으로서 총 조정성립 건수의 26.1%를 차지하였고, 언론사닷컴과 인터넷포털사의 조정성립 건수는 53건으로 총 조정성립 건수의 14.7%였다. 인터넷신문, 언론사닷컴, 인터넷포털사 등 이른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스서비스의 조정성립 건수가 전체 조정성립 건수의 40.8%를 차지한 셈이다.

2) 향후 과제

(1) 법률적으로 ‘언론’으로서의 지위 부과 문제

개정 언론중재법은 여전히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¹¹⁾”으로 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언론사닷컴을 인터넷신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정 언론중재법에서 언론중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인터넷포털사와 IPTV는 법률적으로 ‘언론’의 지위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즉 개정 언론중재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여전히 인터넷포털사와 IPTV의 법적 개념은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셈이다.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법 규정 내에 포함되어야 인터넷을 통한 뉴스 서비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공백 없이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배열기록 보관 문제의 현실성 제고

개정 언론중재법이 인터넷신문과 인터넷포털사에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영세한 인터넷 매체에게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배열 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우고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그러나 이 범주에 속하는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여전히 배열전자기록의 보관의무가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이라는 기준이 과연 현실적인지 보다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보

제공받을 수 있다. IPTV는 현재 KT(메가TV), SK브로드밴드(舊 하나로텔레콤 하나TV), LG데이콤(my LGtv)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 중 KT는 2008년 11월부터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으며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은 2009년 1월 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다.

출처: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rkb0610049> [접속일: 2010. 3. 22]

11) 현행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의 요건으로 취재인력 2인을 포함해서 3인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기사의 30퍼센트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 주간 단위로 내용을 업데이트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의 대상이 되는 기사 원본은 당연히 보관해야 하지만 배열기록에 대한 보관의 경우 피해 구제 시 필요한 영역에 한정시켜 보관범위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피해 구제의 방법상의 가이드라인 필요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문의 내용·크기·횟수·게재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해야 한다”(법 제2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이나 언론사닷컴, 인터넷포털사의 뉴스 기사는 오프라인상의 전통적인 신문이나 방송 매체의 기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 구제 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시행방법이 오프라인 매체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게재 시간(duration), 게재 위치, 글자 크기와 자체(字體), 반론 보도문의 자수(字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기존의 매체와는 달리 인터넷기반 매체의 기사는 삭제 가능하므로 인터넷기반 매체의 기사로 인한 피해자는 기사의 삭제 요청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¹²⁾

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뉴스 매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단지 뉴스의 품질 문제뿐 아니라 유통 면에서의 과급효과 문제도 심각하다. 이

는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이 송수신상의 물리적 거리나 시간적 제약을 극복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한번 올라온 글은 순식간에 확산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인터넷기반 매체로 인한 피해의 구제는 신속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프라인상의 신문이나 방송을 기준으로 정해진 현행 조정·중재 처리기간을 정보의 빠른 전달 능력을 지닌 인터넷에 걸맞게 단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기사는 계속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인터넷포털사가 정정 반론 추후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법 제17조의2 제1항)고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 구제가 신청된 기사는 기사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내리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¹³⁾

(4) 블로그의 저널리즘적 기능 증대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뉴스서비스”개념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인터넷 뉴스서비스에서 제외시켰다. 즉,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친목

12) 이재진·구본권(2008),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한국방송학보』22권 3호, pp.172-212.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가 요청 중인 경우,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가 있다.

이나 교육·종교 목적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 등은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근 블로그가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개인 홈페이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해 올린 글이나 다른 인터넷기반 매체에서 스크랩해 올린 기사는 개정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블로그의 영향력은 초기 단계가 아니라 이미 성숙한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예를 들면, 지난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은 기존 언론 보도에 의해 촉발되어 블로그를 통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¹⁴⁾ 앞으로 블로그 기사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댓글

매체의 속성상 피해자의 접근수단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오프라인상의 신문이나 방송 등에 비해 상호작용성이라는 기술적 특성을 지닌 인터넷기반 매체에서는 피해자가 댓글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은 인터넷 매체의 공론장 기능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한편 댓글과 관련하여 특정 기사와 연관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요소가 있는 댓글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 원 기사가 아닌 댓글에 의해

제3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행 언론중재법은 기사로 인한 피해만 구제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6) 인터넷포털사가 자체 생산한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 여부

인터넷포털사에서 자체 생산한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자체적인 지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각 중재부의 개별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인터넷포털사의 자체제작 기사가 늘어날 경우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¹⁵⁾

5. 결 어

언론중재제도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이다. 언론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은 자와 언론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제도는 분쟁의 최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화해에 의한 명예로운 해결의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부는 직업법관 이외에도 언론계의 실정에 정통한 위원이라든가 독자층의 이익을 대변할 각계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어 언론과 피해자 쌍방을 이해시키는 데 유리하고, 언론사 측의 입장에서는 곧바로 제소되기 보다는 그 이전 단계에

14) 김고은 (2008. 5.14). 네티즌, 더 이상 뉴스 소비자가 아니다: 행동하는 블로거, 정책검증에서 의제설정까지. 『PD 저널』제558호, 5.

15) 인터넷포털사 자체 생산 기사에 대한 조정·중재 사건은 현재까지 1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변희재 씨가 야후코리아의 ‘송지현의 사람IN’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사건(2009 서울조정413)으로, 심리를 맡은 서울제6 중재부는 인터넷포털사가 자체 제작한 해당 콘텐츠가 정식 뉴스보도 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서 절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소송비용이나 소송절차상 번잡함이 없이 손쉽게 피해의 구제가 가능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과 개인용 컴퓨터의 대중화로 사회적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인터넷 기반 매체로 인한 언론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 개정 언론중재법이 발효되었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발달된 의료기술로 질병을 치료받

는 것 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상식이다. 평소 언론이 취재보도의 원칙을 준수하고, 갖가지 취재보도 상황에서 올바른 윤리적 판단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일단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곧바로 법에 호소하기 보다는 언론기관과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모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언론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한다.



토 론

사회 김 병 하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중재부 중재부장

김병하(사회자, 중재부장)

오늘 발제는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토론에서는 인터넷 신문 등 기타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질문이 아닌 언론과 관련된 평소 생각을 말씀하셔도 좋겠다.

구양술(호남매일 사장)

신문사가 보도한 기사를 인터넷 매체가 받아서 게재한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사를 받아 게재한 인터넷 신문사도 처음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와 똑같은 조정, 중재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또 기사를 댓글로 올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댓글을 올린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 바란다.

이동근(발제자, 중재위원)

우선 댓글은 언론중재법상 조정, 중재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가 타 언론사에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하여 문제가 된 경우, 피해자가 기사 생산 언론사를 대상으로 조정 청구를 하였다면, 기사 생산 언론사는 정정 등에 대한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도 통지하게 되어 있다.

김일환(광주일보 여론매체부장)

블로그 저널리즘도 조정, 중재 대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 요즘 소셜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일반인이 올리는 글도 기사형태로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법령상 이러한 매체는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매체를 조정, 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또 손해배상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손해배상적인 측면보다는 피해자들이 소명을 할 수 있는 반론의 장을 확대해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김양순(나주뉴스 편집국장)

대다수 기자들이 개인 블로그를 운영한다. 포털에 의해 운영되는 블로그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언론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도 많다. 이러한 블로그에는 본인이 취재한 내용에 대한 뒷얘기나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글을 많이 올리는데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언론사가 되는 것인지, 기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내용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동근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의 기본 특징이 상호작용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댓글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김병하 :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는 조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언론중재제도는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당사자 간의 화해를 이끌기 위한 제도다. 그렇다고 명예훼손 등이 방지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과 비용적 문제가 있겠지만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박진채(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상임부회장)

언론중재제도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언론 피해구제제도라고 했다. 언론 보도를 통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처럼 해결하는 나라는 없는지, 외국의 경우는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지 궁금하다.

김용주(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다른 나라에도 우리와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대부분 자율기구로 운영된다. 우리는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한 기구라고 하는 것이다. 영미 법계에서는 거의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나라의 중재제도는 독일에서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여 시작하였으며, 조금씩 발전하여 여기까지 왔다. 다른 나라에는 자율적 기구가 있지만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가는 등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

블로그를 조정 대상으로 포섭하는 문제도 국회에

서 논의가 많이 됐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문제도 있고, 중재제도 자체가 사실적 보도에 대한 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담지 못했다. 앞으로 사례가 축적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중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의견을 참고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진영(광남일보 사장)

조정이 성립이 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했다. 이러한 효력이 정정, 반론 보도에 국한되는 것인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청구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김병하 : 정정보도만을 청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정정보도에 대해서만 화해의 효력이 있고 이후에 제기될 수 있는 청구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덕모(중재위원)

조정신청이 접수된 기사를 보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된 사건이 많다. 기자가 전언이나 풍문에 의지해 기사를 작성하여 오보가 되거나, 객관성을 상실한 기사가 된 경우가 많다. 언론사는 기자들에게 법을 알고 기사를 쓸 수 있는 실무 교육이나 전문화 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

권 성(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로서는 중재위원들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점은 중재위원 모두가 명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장담할 수 있다. 조정, 중재는 사실보도와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사실 여부 판단은 외부 압력이나 청탁에 좌우되지 않는다. 사실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무리하게 정정을 명령하는 일도 없다. 양측을 조율해 반론보도 합의를 유도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은 분명히 신뢰해도 좋겠다.

사전심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법률상 사전심사에 관한 제도는 없다. 그러나 신청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조정, 중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중재위원들이 사전에 의사를 교환하여 양쪽을 불러 심리하는 일 없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 방송에서 키 작은 남자를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 일이 있었다. 소위 루저녀 사건이라고 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 들어왔었다. 대부분의 중재부에서는 조정대상이 되는 사실보도가 아니라 하여 기각 결정을 했다. 사전심사제도는 아니지만 제도 운영상 적절하게 사건을 걸러내고 있다.

포털이 매개하고 있는 기사가 아니라, 스스로 제작한 뉴스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의 중에 있다. 서울의 일부 중재부에서는 포털 자체 제작 뉴스는 조정, 중재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한 예가 있다. 그러나 포털이 자체 제작한 뉴스도 조정, 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개인 블로그,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도 조정대상

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일부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원칙으로 할 때, 개인 블로그까지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이념적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개인 블로그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가 조정 대상이 된다면 언론중재위원회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의 규모, 인력 정도로는 감당할 수 없다. 혹시 언론중재위원회가 대폭 확대되어서 충분한 인력이 생긴다면 그 때 가서는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너무 세밀한 데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연구를 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세계 각국의 제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언론중재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민간기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거의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해외시찰을 할 때 해외 관계자를 만나보면 우리 제도에 대해 감탄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중재제도를 문화상품으로 수출을 해도 되겠다는 자부심이 있다.

이 자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싶은 사항이 있다. 과거에 언론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국민들의 신뢰와 칭송을 받는 일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민주화가 달성되었고, 국민의 권리의식도 상당한 정도로 높아지는 등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 시계추는 언론자유를 강조하는 것보다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과거에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청구하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는 남용이 걱정될 정도로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신청인들도 신문, 방송에서 몇 줄 정정, 반론보도를 해준다고 만족하지 않는다. 실제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청구의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서 결정하는 손해배상 액수는 법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것보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조정,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언론사와 신청인 쌍방에 모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 언론사들은 재정적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언론사에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에 가서 생길 수 있는 엄청난 부담을 사전에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인식을 언론사도 달리 하여야 할 때가 왔다. 중재위원회는 합리적으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손해배상 기준표를 만들어 연구를 해 왔다. 지금 내용을 분석 중에 있으며, 그것을 토대로 양쪽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려고 한다. 앞으로는 손해배상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취지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

